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3. 20.
판 결 선 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처분 중 '취득세 추징처분(본세)'란 기재 각 취득세 추징처분과,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본세)'란 기재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

1) 원고는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4,655,740원과 지방교육세 7,835,4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① 취득세의 경우, 별지1 표 기재 '취득세 추징처분'란 기재 금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취득세 추징처분(본세)'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하면 원고가 구하는 액수(124,655,740원)이고, ② 지방교육세의 경우,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7,835,49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교육세액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6. 8. 11. 과세예고 통지된 금액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12월 무렵 [redacted]시 B 잡종지 29,159㎡, C 임야 39,905㎡, D 임야 1,496㎡, E 임야 413㎡(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뒤 2011. 3. 1.부터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9.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던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변경 고시([redacted]시 고시 H)를 하였다.

1. 위치: I 일원
   사업면적: 73,095㎡
   사업내용: 숙박시설, 종합온욕장, 관광호텔 등
   사업비: 77,167백만 원
   사업기간: 2001년~2012년
2. 사업시행자: 변경 있음

당초	변경
주식회사 [redacted]개발	원고(F)

다. 피고는 2011년 5월 무렵 위치를 [redacted]시 C 일원으로, 건축연면적을 3,882.61㎡로, 사업기간을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하여 G 개발사업 건축사업에 관한 변경승인을 하였고, 2012. 6. 13. G 개발사업 확정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시행함을 공고([redacted]시 공고 J)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redacted]시 K 대 1,855.2㎡, L 대 1,568㎡, M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대 1,450.9㎡(이하, 각 'K 토지', 'L 토지'. 'M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새로운 지적공부가 확정 · 시행되었고, 원고는 2012. 6.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G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한 동씩(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건축하였고, 2012. 11. 1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5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합계 124,655,740원) 등을 감면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1. 1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건물 소재지	등기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K 토지	2012. 12. 28.	2012. 12. 28. 설정계약	650,000,000	원고	[redacted]협동조합
	2013. 7. 24.	2013. 7. 24. 설정계약	240,000,000	원고	N
	2013. 12. 19.	2013. 12. 19. 설정계약	760,000,000	원고	O
L 토지	2013. 1. 3.	2013. 1. 3. 설정계약	650,000,000	P	[redacted]협동조합
	2013. 8. 8.	2013. 8. 8. 설정계약	180,000,000	원고	Q
	2013. 12. 19.	2013. 12. 19. 설정계약	760,000,000	원고	O
M 토지	2012. 11. 19.	2012. 11. 19. 추가설정계약	858,000,000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
	2012. 11. 19.	2012. 11. 19.	480,000,000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설정계약			

바.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5. 4. 1.부터 2015. 8. 13.까지 매각되었다.

건물 소재지	채권자	임의경매개시결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매각일	소유자
K 토지	[redacted]협동조합	R	2015. 4. 1.	S
L 토지	Q	T	2015. 4. 30.	Q
	[redacted]협동조합	U		
M 토지	주식회사 [redacted]은행	V	2015. 8. 13.	[redacted]회사

사. 피고는 2016년 8월 무렵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위라. 항 기재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에 부가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별지1 표 기재 처분 중 '취득세 추징처분(본세)'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추징처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본세)'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심판결정서를 2017. 6. 5. 송달 받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조세심판결정문의 정본을 2017. 6. 5. 송달받았더라도, 제소기간의 말일인 2017. 9. 3.이 일요일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소는 그 다음 날인 2017. 9. 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1년 3월 무렵 [redacted]시 B 토지 등을 매수한 뒤 2012. 6. 15.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사업을 연속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여 진행한 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23조에 따라 피고가 하여야 할 도로 개설, 전기 인입시설 · 상수도 인입시설 설치를 원고가 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취득일'은 토지개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기 시작한 2011년 3월 무렵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① 원고가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자금 융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대부업을 하는 Q로부터 자금을 빌렸는데, Q이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이 매각된 점, ② 원고가 2011년 3월부터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 인입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늦어진 점, ③ 피고가 2012. 4. 10. 원고가 공사 진행 중이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건물 사용승인이 3개월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취득세 추징처분의 적법성 여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취득일'을 토지개발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취득세 추징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은 '취득'이란 건축 등에 따라 원시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취득일'은 해당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개발사업이 연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일 또는 개발 시점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12. 11. 1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2년 11월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모텔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소장) 원고는 2012년 11월 무렵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건물은 앞서 본 대로 2012년 11월 무렵으로부터 3년 내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2015. 4. 1.부터 2015. 8. 13.까지 사이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추징처분은 취득일 인정에 있어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의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되기는 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의 '매각'에 경매에 따른 매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는 단지 '매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를 제외한다거나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경매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도 가지고 있으므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매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조는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 10, 16조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는 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지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되, 위 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사업 시행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데,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매각이든 경매에 따른 매각이든 사업시행자가 지구개발사업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각 건물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2항은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29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이 매각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 용수공급시설 ·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2년 무렵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받은 건축허가 중 일부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7항 본문,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 인입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준비기간이 소요되었고, 피고가 2012. 4. 10. 원고가 공사 진행 중이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지연되었다)은 모두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이 지연된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건물의 취득 전의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의 건축허가취소처분과 관련하여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는 원고의 거주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로 개설비,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2017. 11. 16.자 준비서면),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인 2012. 11. 19.부터 2013. 12. 19.까지 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여러 개 마쳤으며, 조세심판절차에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매각된 것은 원고의 자금 사정 또는 수익 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23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금 융자 지원이 [redacted]시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redacted]시가 지원하는 내용도 자금 '융자'의 지원이므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위 (2)항에서 본 대로 좋지 않았던 이상 [redacted]시의 지원을 받았다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추징처분은 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라.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구 지방세법 제150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데, 앞서 본 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정아영

판사 문지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별지1

이 사건 각 처분의 표시

부동산	취득세 추징처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합계(원)
	본세(원)	가산세(원)	본세(원)	가산세(원)	
[redacted]시 K 지상 건물	44,506,370	16,698,780	2,543,220	699,890	64,448,260
[redacted]시 L 지상 건물	44,506,370	16,324,930	2,543,220	678,520	64,053,040
[redacted]시 M 지상 건물	35,643,000	11,780,010	2,036,740	469,460	49,929,21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별지2

관계 규정의 표시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2]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개발촉진지구지정의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

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 제16조(시행자)

①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地區開發事業"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地方公社"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지구개발사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2.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3.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4.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指定權者"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1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끝)